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가합50432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8나206514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가합504321 판결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4.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환, 담당변호사 이지훈

변론 종결 2018. 9. 14.

판결 선고 2018. 10. 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906,200원 및 그 중 203,355,898원에 대하여는

2017. 12. 29.부터 2018. 6. 8.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16,450,447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450,4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2015. 5. 2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2억 5,000만 원 중 2억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제10조(상환범위)

1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이하 생략)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2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하 생략)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3 제1항과 제2항의 '원고가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말하며, 율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나. E은 2017. 10. 18. 원고에게 피고 A가 2017. 9. 26. 이자를 연체하였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7. 12. 29. E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204,276,438원을 대위변제한 후 같은 날 920,540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위 회수금에 대한 변제일부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은 252원($= 920,540\text{원} \times 1/365 \times \text{연 } 1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원고의 채권보전을 위한 대지급금의 합계액은 1,550,050원($= 278,300\text{원} + 492,350\text{원} + 779,400\text{원}$)이다.

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피고 A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 2014. 6. 13. 채권최고액 5억 7,6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 2016. 3. 31.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고(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함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4. 6. 13.경부터 2017. 6. 13.경까지 피고

A에 합계 7억 3,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라. 피고 A는 2017. 10. 10. 피고 주식회사 C('주식회사 F'에서 2018. 2. 5. '주식회사C'으로 상호 변경,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3,0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한다), 피고 C은 2017. 11.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D은 2017. 11.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8,400만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에 합계 8억 2,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바. 피고 A는 2017. 11. 10. 및 2017. 11. 30. 피고 D에 위 다.항 기재 대출원리금합계 739,992,053원(= 258,124,656원 + 481,867,397원)을 변제하였고, 2017. 11. 30.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2 내지 5호증(각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906,200원[= 대위변제원금 203,355,898원(= 대위변제금 204,276,438원 - 회수금 920,540원) + 확정 지연손해금 252원 + 대지급금 1,550,050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203,355,898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7. 12. 29.부터 피고 A,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8. 6. 8.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등 참조).

2)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10. 10.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B의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7. 9. 26. E에 대한 대출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 A가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12. 29. E에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과 보완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10. 10. 피고 A의 소극재산의 가액은 합계943,167,172원[= E에 대한 대출원금 201,657,534원(= 원금 2억 원 + 이자 및 지연손해50/3651)) + D에 대한 대출원금 합계금 1,657,534원(= 2억 원 × 6.05%×741,509,638원{= 255,042,465원(= 2억 5,000만 원 + 2,268,493원2) + 2,773,972원3) + 486,467,173원(= 4억 8,000만 원 + 2,812,931원4) +

1,400,547원5) + 14,134원6) + 2,239,561원7)}) 이상인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7억 5,603만 원 상당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었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소극재산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 서 피고 A가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피고 A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와 전득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및 채권최고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가치가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 D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10. 10.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7억 5,603만 원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는 741,509,638원인바,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C, D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 D의 주장 요지

피고 C,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라는 사실이 나 위 매매계약 체결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 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3) 피고 C, D의 선의 여부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올라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2014. 6. 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5억 7,145만 원으로 감정평가 하였고, 2014. 6. 13. 및 2016. 3.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7억 5,600만 원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4. 6. 13.경부터 2017.6. 13.경까지 피고 A에 합계 7억 3,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7. 11. 10. 피고 D으로부터 합계 8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 A는 2017. 11. 10. 및 2017. 11.30. 피고 D에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원리금 합계 739,992,053원을변제하여 2017. 11. 30.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7억 5,600만 원, 피담보채무인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741,509,638원이었고, 피고A는 2017. 9. 14.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 C 스스로도 피고A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경매를 당할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피고 A의 피고 D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 D이 이 사건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7. 11. 10.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7. 11. 30.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로 제한한다.

3)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 말소될 당시 피담보채무액의 합계액은 739,992,053원이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6. 30. 가액은 756,442,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현재의 가액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인 16,450,447원(= 756,442,500원 - 739,992,053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450,4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문혜정, 판사 성재민, 판사 편병호

별지

부동산 목록

1. 이천시 H 공장용지 1,540㎡

2. 이천시 H I호

[도로명주소] 이천시 J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조 슬래브 및 착색아연 도골강판지붕 2층 공장

1층 330㎡(철근콘크리트 슬래브)

2층 330㎡(경량철골조 착색아연 도골 강판)

부속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단층 기숙사, 식당 82.5㎡ 끝.

1) 2017. 8. 22.부터 2017. 10. 10.까지

2) 2억 5,000만 원 × 10.35% × 32/365(2017. 8. 13.부터 2017. 9. 13.까지)

3) 2억 5,000만 원 × 15% × 27/365(2017. 9. 14.부터 2017. 10. 10.까지)

4) 4억 8,000만 원 × 6.9% × 31/365(2017. 8. 13.부터 2017. 9. 12.까지)

5) 4억 8,000만 원 × 7.1% × 15/365(2017. 9. 13.부터 2017. 9. 27.까지)

6) 2,812,931원 × 13.1% × 14/365(2017. 9. 14.부터 2017. 9. 27.까지)

7) 4억 8,000만 원 × 13.1% × 13/365(2017. 9. 28.부터 2017. 10. 10.까지)